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8. 29.
라. 상정일자 :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대상 :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대 상	소재지	규모	용도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23.12월 준공(예정)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132㎡ (2층)	교육연구시설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기관 :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위탁업무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연 170,680천원
 - 인건비(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 88,680천원(국비 50%, 도비 50%)
 - * 돌봄교사 2명(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 운영비 12,000천원(국비 50%, 도비50%)
 - 리모델링비 50,000천원(국비 50%, 도비50%)
 - 기자재비 20,000천원(국비 100%)

3. 추진상황

- ('19. 8) 서귀포시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 9)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수요예측 및 입지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해안’<행정안전부 제공>
- ('21. 6) 서귀포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륜동)

- ('21. 9)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개년 계획 수립
- ('21. 9) 꿈자람센터 사업계획 확정(다함께돌봄센터 설치내용 포함)
- ('22. 11)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정읍)
- ('23. 5) 서귀포시 제3호,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안 심의(가결)
- ('23. 7) 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3. 8)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4. 향후계획

- ('24. 1~3)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심의 및 계약 체결
- ('24. 4~6)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입 및 종사자 채용
- ('24. 하반기) 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5. 참고사항

-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고,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¹⁾에 설치하고 있으며, 진로설계 교육관·미래 유망직업 등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실감형 교육컨텐츠를 활용한 직업실감체험관·미디어컨텐츠 제작 작업실등이 함께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공간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설치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수요 예측 및 입지 분석에 초등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민간이 보유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경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9. 토론요지 : 생략

10.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수정안의 요지 : 없음

12.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13.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지도·감독,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참고 1 2020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참조모델 구축 분석결과보고서

다) 서귀포시 읍면동별 유사돌봄시설 현황

- 동홍동이 지역아동센터가 5개로 가장 많고, 남원읍 4개, 성산읍 3개 순으로 나타남
- 천지동, 정방동, 효돈동, 예래동, 대륜동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지 않음

서귀포시	유사돌봄시설	서귀포시	유사돌봄시설	서귀포시	유사돌봄시설
동홍동	5	표선면	2	천지동	0
남원읍	4	안덕면	2	정방동	0
대정읍	3	중앙동	1	효돈동	0
성산읍	3	송산동	1	예래동	0
중문동	2	서홍동	1	대륜동	0
대천동	2	영천동	1		

[표 5] 서귀포시 읍면동별 유사돌봄시설 수

참고 2

제주혁신도시 꿈자람(Dream Up)센터 건립사업

□ 추진배경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여 이전 기관 임직원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주변 신시가지 지역까지 경제 활성화에 일조

□ 개 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
- (사업기간) 2021. ~ 2023.
- (사업량) 건축 연면적 2,360㎡,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실감영상 체험관, 사이버 놀이동산, 진로교육관, 돌봄센터 등
- (총사업비) 90억원(국비 45억, 도비 45억)

□ 추진상황

- '20. 9.: 꿈자람센터 사업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20. 12.: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완료
- '21. 3.: 공공건축 심의 등 건축절차 완료
- '21. 6.: 건축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10.: 실시설계 준공 및 인허가 등 협의 추진
- '21. 12.: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 '22. 3.: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착수

□ 추진계획

- '21. 12.~'23. 12.: 꿈자람 센터 건축공사 추진 및 준공

□ 기대효과

- 정부정책 “혁신도시 시즌2” 와 정책을 맞추어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 선택 지원
- 도내 부족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시설 향유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건축개요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input type="checkbox"/> 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input type="checkbox"/> 사업량	연면적 2,360.78㎡, 지하1층/지상4층		
<input type="checkbox"/> 층별면적표			
구분	실명	면적(㎡)	비고
지하층	전기실	10.92	
	펌프실	47.43	
	공용공간	35.69	
	소계	94.04	
1층	공용공간	40.27	
	소계	40.27	
2층	휴게실	34.83	
	사무실	93.98	
	다함께 돌봄센터	131.57	
	사이버놀이터	237.55	
	공용공간	354.05	
	소계	851.98	
3층	직업 실감체험관	338.52	
	공용공간	348.2	
	소계	686.72	
4층	직업 실감체험관	380.56	
	진로 설계교육관	183.83	
	공용공간	123.38	
	소계	687.77	
합계		2,360.78	

조감도(꿈자람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